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1. 9 선고 2020가단669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쌍희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날

담당변호사 김은지

변론 종결2021. 9. 28.

판결 선고2021.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9. 1.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18. 접수 제58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부친이다.

나. C과 피고는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다가, 피고가 2020. 11. 16. 대구가정법원 2020드단113633호로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상태이다.

다. 한편, C은 2019. 1. 18.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당초 소유지분 비율: C 1/2, 피고 1/2, 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본인의 1/2지분에 관하여 2019. 1. 17.자 증여(다음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2016년 9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중 일부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9. 24.부터 2016. 10. 14.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62,000,000원 상당을 직접 지급해주었다. 이후 원고는 2016. 10. 29. C과 사이에, C이 62,000,000원을 별도 이자 없이 차용하고, 3년 이후 분할상환하는 형태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하여 62,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C이 2019. 1. 17. 피고와 사이에 C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와 C은 2016. 9. 24. D와 사이에, D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와 C이 매매대금

11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후 2016.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9. 24.부터 2016. 10. 14.까지 D 명의 은행 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금액인 62,000,000원(다음부터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인 2021년 9월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다음부터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사실확인서1) (앞 부분 생략)

2. C은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무렵인 2016. 10.경 부친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16,000,000원 중 62,000,000원(= 계약금 12,000,000원 + 중도금 50,000,000원)을 차용일로부터 3년 이후부터 분할상환하기로 하고 차용하였습니다.

3. 그 후 C과 피고는 위 차용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4. 그런데 C이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9. 1. 17. C 소유지분인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습니다.

5.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이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지분 1/2 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내용 생략)

라) 한편,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차용일을 2016. 10. 29.로 한 차용증서(다음부터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가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되었는데, C이 2019년도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상의 금원 일부를 변제하지는 않았다.

2) 구체적인 판단2)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통하여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야기함으로써 스스로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 상태로 될 것을 요하고, 이러한 무자력에 관한 증명책임은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도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위와 같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본적으로 원고가 C에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C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 상태에 있어 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당시 C과 수익자인 피고 모두 위 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기본적으로 C에게 2016년 9월경 이 사건 금원 62,000,000원을 대여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서를 그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C과 원고가 자필로 작성한 내용 정도만으로는, 실제로 이 사건 차용증서가 그 작성일시로 기재된 '2016. 10. 29.'에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차용증서상에는 '3년 거치 분할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분할상환의 방식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며, 실제로도 위 차용 이후 C이 원고에게 일부의 금원이라도 변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후 약 1년 9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녀인 C과 그 배우자인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용증서 이외에 추가적인 금전 대여 관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처분문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2016년 9월 무렵 자녀인 C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을 증여 형태로 지급했다고 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차용증서는 단지 위와 같은 증여 일시에 증여세 등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아니면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에 결국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또한 C이 채무초과 내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이를 입증할 증거로 이 사건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C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 등에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기에 이 사건 사실확인서 내용만을 근거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이 채무초과 내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더욱이 설령 C이 이 사건 금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보더라도, C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과연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체결한 것인지 알 수 있는 합리적이 근거나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이는 이 사건 차용증서상의 채무 변제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C이 원고로부터 채무 이행을 독촉받거나 일부의 금원에 대한 변제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없다는 측면에서 더욱 C의 악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악의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C과 원고 및 피고의 관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시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수익자인 피고는 선의라고 볼 여지가 더욱 크다.

④ 달리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고,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나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영순

별지

1) 일부 내용만 수정하여 기재한다.

2) 참고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약 1년 9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이나, 원고와 C 및 피고의 관계, 관련 이혼 소송 제기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이상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으나,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고,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